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20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강대식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상정된 안건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2

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2
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2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3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3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3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3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3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3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3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2)	3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3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3
1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3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3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3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3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3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3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3
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강대식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20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1)
 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9)
 3.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17)

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623)
5.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07)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71)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0)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7)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4)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82)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6)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05)
1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1)
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5)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7)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23)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9)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77)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8)

(10시09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승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부승찬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7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월 18일, 19일 양 일간 법안심사를 진행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게 된 경우 그 소송에 대한 변호인 선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송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송 등 지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형법상

살인의 죄 및 상해와 폭행의 죄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어해면구역에서 퇴거의 강제 등을 조치할 경우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 강선영 의원, 유용원 의원,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확인신체검사 시 질병 등의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진료·치료 기록 등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다음,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시험평가, 품질보증 등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별도의 조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방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법률안과 관련된 건가요?

○김병주 위원 예.

○박선원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도?

○박선원 위원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지금.....

○김병주 위원 저는 법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세요.

○**김병주 위원** 법과 관련되는 것은 7분을 줘야지요.

○**위원장 성일종** 법?

○**김병주 위원** 예, 법.

○**위원장 성일종** 그러세요. 7분 드리세요.

○**김병주 위원** 원래 법안소위 이것 할 때 시간을 7분씩 줬어요.

○**위원장 성일종** 7분 드리세요.

○**김병주 위원** 어저께하고 이틀에 걸쳐서 법안소위 위원으로 법안을 그쳤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핫했던 것이 오늘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계엄법입니다. 무려 60건이 올라와서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했었고요. 법안소위에서는 그것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들 전부 다 종합적으로는 계엄법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60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다음,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는 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엄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또 법안소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직무대행님, 같이 참가했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방부에서도 계엄법을 수정·보완하는 것에는 동의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님들 의견하고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김병주 위원** 내용 면에서는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헌법과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많더라고요, 60개 법안 중에는. 그걸 같이 빨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번에 군에서 공익신고자로 내정이 된 인원이 있지요. 몇 명 됐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언론에서 2명 된 걸로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제 정무위에서 권익위원회 2명 됐다고 얘기했고, 광종근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2명이 됐다라고 실제 발표를 했습니다. 광종근 전 사령관이 됐고 1명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했던 공익신고자들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보니까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를 하고 국회의원은 권익위에 연결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요.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일부 형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감경의 사유가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군장병들도 알아야지요,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분 보장이 돼야 되고 신원 보호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특히 14조에는 감경에 대한 조항도 나와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범이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면 감경이 되고 면제가 되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사실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경제적인 혜택도 여기 보호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와요. 변호사비에 대한 거래든가 본인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이나 육체적·정신적 피로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 보호법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권익위원장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2명,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2명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장관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권익위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거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법원이나 이런 데서 감안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계엄군에 관여를 했거나 또 관여한 장병들 중에 지금 많이 불안할 거예요. 조사를, 수사를 받은 인원도 있고 아직 안 받았지만 불안한 인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익제보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이 발의가 돼야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도 어디까지 갈지, 경찰에서도 제대로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아직 방향이 안 정해졌잖아요,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수사는 저희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김병주 위원** 나중에는 국방부도 자체조사를 사실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병들이 대단히 불안해하는데 이런 공익제보 제도에 대해서 좀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방위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꽉종근 장군하고 그 밑의 707단장에 대해서, 사실 여당에서는 꽉종근을 우리 민주당이 회유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707특임단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일부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회유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는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가 최고 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요. 공익제보자가 된 그런 것들 자체가 여기 보호법에 보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저도 사실 성일종 위원장님이 707단장 회유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앞으로 그런 것 안 할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회유라는 이런 것들을……

○**박선원 위원** 회유한 거지.

○**김병주 위원** 아니요, 전혀 하지 않고 국방위가……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박선원 위원** 회유 안 했다고 하니까 1분 주잖아. 뭐 회유를 안 해.

○**김병주 위원** 아니요, 회유했다라고 자꾸 서로 간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안 좋지요.

왜냐하면 과종근 사령관도 본인은 양심에 의해서 했다고 누누이, 본인은 했다고 그러는데 제3자들이 회유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이 정쟁이고.

우리 군장병들이 12·3 비상계엄에, 사실 국민도 피해를 봤지만, 피해를 본 건 사실이지요. 지금 감옥에도 많이 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장병들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부로 과종근을 회유했니 707단장이 회유당했니 서로 이런 논쟁은 종지부를 찍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고 나서 법안 1항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성일종** 그럼요. 그것은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께서 탄핵 공작 모의정황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현태를 회유하신 것 같은데요. 야당 간사 없이 위원장실에서 만나셨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성일종** 예, 만났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진술서 받았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진술서?

○**박선원 위원** 예.

녹음하셨지요?

○**위원장 성일종** 녹음이요?

○박선원 위원 녹음과 진술서 받으셨지요?

○위원장 성일종 그것은 제가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박선원 위원 아니요.

그리고 보좌관 배석했지요?

○위원장 성일종 다 있었어요.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김선호 국방장관대행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해외파병부대장으로 인사청탁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어떤 거요?

○박선원 위원 UNIFIL이나 이런 데 해외파병부대 나가고 싶다고 위원장께……

○위원장 성일종 전혀 그런 얘기 없었어요.

○박선원 위원 안 했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없었어요.

○박선원 위원 그러면 녹음이나 진술서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그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유 판단에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성일종 무슨 거래가 있어요?

○박선원 위원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장관대행께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해외파병부대장으로 해외 도피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적 없으세요?

○위원장 성일종 박 위원님.

○박선원 위원 아니, 없으세요?

○위원장 성일종 박 위원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이야기하시지요.

○박선원 위원 품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박선원 위원 여야 간사 없이 위원장 밀실에서 대령급 단장을 회유하시면서 진술서까지 받았어요? 녹음도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얘기하세요.

○박선원 위원 그 녹음에 해외파병부대장 인사 청탁은 뺏어요?

장관직무대행님, 김현태 특임단장 지금 돌아다니면서 해외파병부대장 해외로 보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감사관님.

없어요? 국방부에 감찰관이나 감사관 없어요?

○위원장 성일종 박 위원님.

○박선원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박 위원님,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한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마

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원 위원** 아니, 모독 안 하고 위원장님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청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위원장 성일종**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야 위원님들 공히 계엄과 관련해서 김현태 대령한테 대면보고해 달라고 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김현태 대령이 모든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나서 국방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오겠다고.

○**박선원 위원** 아니, 해외파병부대장.....

○**위원장 성일종** 얘기 들어 보세요.

○**박선원 위원** 해외파병부대장 청탁 받으셨냐고요?

○**위원장 성일종** 그런 얘기 없었어요.

○**박선원 위원** 받았지요!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내가 공문을 보냈고 와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박선원 위원** 안 했다는 말을 못 하네.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무슨 해외파병 청탁을 해요, 지금? 수사 중인데.

○**박선원 위원** 두고 봅시다.

○**위원장 성일종**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박선원 위원** 두고 보자고요.

○**위원장 성일종** 그런 사실이 없으면.....

○**박선원 위원** 조금 이따가.....

○**위원장 성일종** 아니,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면 법안 질의로 연결해 갈게요.

○**위원장 성일종** 지금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라고 그래서.

○**박선원 위원** 뭘 막 이야기해요?

○**위원장 성일종** 만약에 김현태,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박선원 위원** 녹음 안 했을 수도 있지. 서서 나와 가지고 할 수도 있지요, 개인 청탁인데.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박선원 위원** 함부로 이야기 안 해요! 일대일로 밀실에서 만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위원장 성일종** 누가 밀실에서 만나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이 여야 간사도 없이.

○**위원장 성일종** 누가 밀실에서 만나요!

○**박선원 위원** 위원장실에서. 그래 놓고 누구한테 덮어씌우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김병주 위원하고 박선원 위원은 여야 간사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만났어요?

○박선원 위원 거기는 열린 공간이에요, 열린 공간. 나는 가서 유튜브 다 공개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성일종 그다음에 여기 3층에서 만날 때 그것도 열린 공간이에요?

○박선원 위원 그것 다 공개된 장소예요, 공개된 공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위원장 성일종 왜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선원 위원 아니, 위원장이 위원장같이 행동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성일종 말조심해요.

○박선원 위원 말조심하세요! 어디 가서 지금 이 판국에 무슨 탄핵 공작이니……

○위원장 성일종 자……

○박선원 위원 그때 탄핵 현장에 위원장님은 해외출장으로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놓고 어디 나중에 와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위원장 성일종 지금 함부로 얘기하시지 마세요.

○박선원 위원 뭘 함부로 이야기해요!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한 말씀 해야 되겠어.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윤상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회유가 없었다, 존귀하신 김병주 위원님께서 ‘회유가 없었다’ 앞으로 정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명확한 정황은 회유를 하게끔 행동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12월 6일 날 김병주 위원님께서 유튜브에다가 광종근 사령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관님……

○박선원 위원 뭘 불러요, 우리가 갔지.

○윤상현 위원 하여튼 간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현직 특전사령관이 군사·국방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군인사복무규정 16조 위반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윤상현 위원 그러고 나서 12월 10일 날 또 여기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할 때 쉬는 시간에 가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박범계 의원 오셔 가지고 답변 이것하고 이것 아니냐고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대 주겠다, 변호사 대 주겠다, 이게 회유가 아니고 뭐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께서 정의감에 반론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회유의 정황이 있고 가스라이팅한 정황의 증거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회유 이런 얘기를, 정쟁을 하지 말자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쟁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회유 정황이 있는 거고 가스라이팅 정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정의감 있는 김현태 단장 불러서 그걸 단독으로라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때 들어오셨어야지요. 그 자리에 오셔서 김현

태 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셨어요? 지금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김병주 위원 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화합할…… 신상, 이것은 해명을 해야 돼요.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이것 계속 진행하면……

○김병주 위원 아니, 신상발언 좀 주세요.

○허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윤상현 위원님에 대한 신상발언 좀……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자료제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셨으니까 신상발언은 하게 하시지.

○김병주 위원 직접적으로 거명했으니까 해명을 해야지요.

○위원장 성일종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허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고 하세요.

○허영 위원 정확히 기록해서 꼭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비화폰이 다양한 불법·위법적인 계엄 내란 사태에 동원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쓰고 있던 비화폰의 상당수를 국방부로 관리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질의한 다음에 ‘관리 전환의 규모와 사유 그리고 비화폰에 대한 일련번호와 증명서가 있어서 관리 전환 내역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보안을 전제로 해서 제가 제출을 받고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할 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도 현재 진술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서부터 4일까지 707특임대가 독자적인 SNS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소통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제출한 특임단의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문서로 ‘그런 단톡방 운영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언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그 단톡방이 캡처가 되어서 ‘운영됐다’라는 사실이 단독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장관대행은 특임단이 12월 3일서부터 4일 상황에서 그런 단톡방이 운영됐는지, 그 단톡방의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더 드리세요.

○추미애 위원 저도 자료 요구……

○허영 위원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국방부의 국회협력단장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길 안내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현재의 증언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력단장은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협력단장의 12월 2일부터 그다음에 12월 6일 정도까지의 협력단장의 국회 내에

있어서의 활동 기록 이런 것들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추미애 위원 아니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자료 요구하시고요.

○김병주 위원 신상발언, 끝나고 좀……

○추미애 위원 직무대행님, 임성근 소장이 25일 전역한다고 알려져 있네요, 보도에.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은 국방부나 해병대 군 자체 내부에서 조직의 기강이나 조직적 정의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 없지 않아요, 그냥 나가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연구관으로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이 보직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예편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징계를 회부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징계 회부 자료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무보직 대기 중 상태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직무대행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후에 진도가 나갔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관련해서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오면 제가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해병대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건의가 오면 차관님은 그렇게 허용을 하실 생각인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현재 해병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직무대행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직적 정의는 빨리 해소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부정의를 정의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의를 저지른 사람은, 한 사람은 그냥 자동 예편되게 그냥 방관을 하고 그것을 정의롭게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기소당하고 무죄선고 됐는데도 조직이 해결하지 않고 무보직으로 계속 대기를 시키고 있고 이렇게 서로 소극적으로 평통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신상발언 요청하셨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세요.

○김병주 위원 광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지금 윤상현 위원이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고요. 광종근 사령관도 본인은 회유당한 적이 없다,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707단장도 여기 와서 사령관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좀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정황을 얘기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윤상현 위원은 여기에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면책특권에 숨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확히 기자회견하세요.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할 테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치졸하게 하지 마세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국방위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국방위원으로서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본인들이, 핵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안 나오고 하니까 실제 국민들은 제2 내란, 제2 비상계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박선원 위원하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혹시 또 영상 찍는데도 편집하고 하면 회유한다고 할까 봐 도착서부터 후를 공개적으로 완전 라이브로 한 겁니다. 거기에는 특전사, 경호병력도 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있는 아래에서 전 국민이 보게 한 겁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가 김병주TV에 나올 때부터 탄핵 공작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윤상현이가 화답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답을 해서 회유했니 공작했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한 몸이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발, 꽉종근 사령관 지금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잖아요. 이제 좀 풀어 줍시다. 무슨 놈의 회유입니까? 회유하면 저하고 임종득이하고 더 친하고 성일종 위원하고 더 친하지, 제가 성일종 위원 회유할 수 있어요? 임종득 위원님 회유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회유 정황이 있다고 말이야.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 사령관 할 때 작전처장 했다면서요?

○김병주 위원 사령관 할 때 연합사 작전처장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언제 같이……

○김병주 위원 거짓말이 많은데 내가 사실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다가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참모로 안 있었……

○김병주 위원 비겁하게 면책특권에 숨어서 이러쿵저러쿵하지 마세요.

○윤상현 위원 아니, 면책특권 얘기가 아니라……

○김병주 위원 정신 차려요! 내란수괴하고 한 몸인 윤상현 위원은 국방위원회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지금 전 장병을 회유하려고 와 있어요? 공작하려고 왔습니까?

○윤상현 위원 아니,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무슨 내란수괴야! 지금까지 내란수괴랑 뭘 했어? 아니,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해?

○김병주 위원 아이고, 진짜 문제 제기 안 하니까…… 내란수괴와 한 몸인데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임종득 위원 한 몸이라는 말을 해!

○김병주 위원 내란을 증명하려고 왔어요?

○위원장 성일종 그만하세요.

○김병주 위원 제가 윤상현 위원 말씀 때부터 문제 제기하려다가 참았는데……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윤상현 위원 말을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해. 김병주 위원님, 말 똑바로 하셔요.

○김병주 위원 말 똑바로 할 사람은 윤상현 위원이에요. 12·3 비상계엄 때 어디 있었어요?

○위원장 성일종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저는 못 들어왔어요.

○김병주 위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윤상현 위원 아니, 못 들어왔어요. 아니, 말을 똑바로 하시라고.

○김병주 위원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자격이 없으면 국민께 석고대죄해야지 무슨 놈의…… 아니고, 참 치졸하고 치졸하다.

○윤상현 위원 아니, 당신의 인격이 그것밖에 안 돼?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내자고요. 끝내자고. 군 장병들 보는 앞에서……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회가 열려…… 잠깐만요.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여당 위원님이든 야당 위원님이든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거기에 맞게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윤상현 위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김병주 위원 아니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뭘, 아니고, 참 부끄러워요.

○임종득 위원 (손을 훑)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제가 지금 더 의사진행발언을 자꾸 드리게 되면……

○한기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김병주 위원님, 누구는 자격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해요?

○김병주 위원 아니, 12·3 비상계엄에 그때 어디 있었어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님.

○한기호 위원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해요?

○윤상현 위원 아니, 말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위원장 성일종 자,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고, 비상계엄 옹호하는 사람한테 말의 수준을 따져요?

○위원장 성일종 그만하세요. 유튜브 찍으니까…… 유튜브들 찍고 있나요?

○김병주 위원 좀 좋게 좋게 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러세요, 왜?

○한기호 위원 뭘 좋게 해?

○김병주 위원 왜 자극을 해?

○한기호 위원 혼자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서 뭘 좋게 해?

○박선원 위원 법안 심사합시다. 연번 1번에 대해서 하지요.

○위원장 성일종 그만하시고요.

안건부터……

○김병주 위원 국민께 석고대죄하세요. 할 얘기 없으니까 웃고 계시는데 그렇게……

(장내 소란)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그만하세요.

○한기호 위원 아니, 정회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만하세요.

○임종득 위원 위원장님, 아니, 균형을 맞춰 주세요. 지금 발언을 어떻게……

○김병주 위원 뭘 균형을 맞춰, 지금 저쪽에서 날 공격했으니까 균형 맞춰 준 거 아니야.

○윤상현 위원 아니, 공격이 아니라 회유 정황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김병주 위원님 똑바로 들으세요.

○임종득 위원 발언의 균형을 맞춰 달라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지요.

○김병주 위원 좀 좋게 하자고 제의했으면 좋게 좋게 하지.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님, 좀 따라 주세요.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한기호 위원 아니, 정회하세요. 그런데 무슨 회의를 해요? 회의가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성일종 아니,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드리면 또 이게 언쟁이 높아지십니다. 하시려면 이 법안 처리하고 그 이후에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박선원 위원 법안 1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법안 1번이요?

○박선원 위원 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성일종 예,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7분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예.

1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 법률을 개정하는데요. 우리가 군용장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용도가 지정돼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군용장비는 다 용도가 지정돼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특히 직무대행께서는 수방사령관을 하셨기 때문에 특임단의 임무와 그들의 군용장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현태 특전사 707단장이 현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군용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2월 6일 현법재판소에서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타이를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코브라 케이블타이? 문 잠그는 용이에요?

잠깐 나와 보세요.

(코브라 케이블타이를 가리키며)

이겁니다. 이 앞에 까만 거 보이시지요? 이게 코브라 케이블타이예요. 저겁니다. 저거로 문 잠글 수 있어요? 이게 특전사 전용 미제 코브라 케이블타이예요. 이거 문 잠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쪽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케이블타이예요. 저거 707이 들

고 왔던 거예요.

저런 장구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으로서 특임대 다 이끌어 보셨는데 거짓말 마구 해도 되는 거예요? 갖고 와 봐요.

(케이블타이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로 무슨 문을 잠가요? 빼집니까, 이게? 빼줘요?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 봐요. 아니, 이렇게 마구잡이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위원장 성일종 마이크 끄세요.

○박선원 위원 뭘 꺼요, 끄기는? 위원장 불리해? 이러한.....

○위원장 성일종 아니, 박선원 위원님 잠깐 계셔 보세요.

○박선원 위원 아니, 들어 봐요. 군복 및 군용장구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지금 이 법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알지요, 지금 소위 위원인데.

○위원장 성일종 지금 여기에 제조·판매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그걸 그런 논쟁으로 합니까?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빨리 바로 켜세요. 위원장, 무슨 짓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거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해다가.....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지금 의원 품격에 맞게 하세요.

○한기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의 무슨 지금 위원하고 싸웁니까?

○위원장 성일종 만약에 그걸 하시고 싶으면 법률안 통과하고 난 이후에.....

○조승래 위원 얼마나 창의적인 질의예요, 얼마나 창의적인 질의.

○한기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하고 무슨 싸워요, 지금!

○위원장 성일종 가만히 계세요,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아니, 위원장이 무슨, 위원장님이 싸우고 있어요?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회의를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지 지금 그걸 그렇게 말이에요, 전연 그거 관련이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박선원 위원 또 있으니까 위원장님 관련 사항 이야기할게요. 관련이 있는 이야기할게요, 위원장님 관련 사항.

그런데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보면 이게 문 잠그는 용이냐고요, 이게. 아니지요? 그것을 헌법재판소와 국정감사장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이 법안은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게 그런 내용들은 법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시간 넣어 주세요. 그 법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엔간히 하세요.

○박선원 위원 그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지금 이 법안하고 전연 관련이 없는.....

○박선원 위원 시간 넣어 줘요.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지금 무슨, 뭘 가지고 얘기해.
-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이냐고, 얼마나 창의적이잖아.
- 위원장 성일종 무슨 창의적이야, 창의적……
- 박선원 위원 아니, 군용장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일종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이따가 좀 하시지요, 의결하고.

- 안규백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성일종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박선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제1번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발언을 다 못 했는데 이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성일종 이 법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선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관련 부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이 법안하고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요?

- 박선원 위원 그렇습니다. 관련 있다는 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어떤 게 관련 있다는 거지요?

- 박선원 위원 예로써 내가 설명을……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 박선원 위원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제가 사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성일종 아까 7분을 드렸는데 엉뚱한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 박선원 위원 지금 5분 3초 남았잖아요.

- 위원장 성일종 법률안과 관련된 것만 하십시오. 만약에 안 하면 제가 이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박선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도 돼요, 제일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법안 있으니까.

- 위원장 성일종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박선원 위원** 산회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제 발언권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법안 다 한 후에……

○**위원장 성일종** 발언권을…… 아니, 그러니까 법률안에 관련돼서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아니,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성일종** 그래야 회의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관련 사항이라는 이유로 산회 선포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성일종** 나하고 이 법안하고 무슨 관련이, 내가 이 법안 냈습니까?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회시키지 말라고요.

○**위원장 성일종** 회의를 방해하지 마세요.

○**박선원 위원** 회의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성일종** 회의를……

○**박선원 위원**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위원장 성일종** 아니, 아까 회의 방해를 하신 거잖아요.

○**박선원 위원** 무슨 방해예요.

○**허영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가만히 계시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 법안을……

이게 1번 항이지요?

○**박선원 위원** 예, 1번이니까 제일 뒤로 돌려도 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1번 법안을 제일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법안은 국회법 66조 3항과 제79조제2항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부터 10항까지 허영 의원, 김성원 의원, 민홍철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1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홍기원 의원·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5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안규백 의원·강선영 의원·유용원 의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강대식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1시38분)

○위원장 성일종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훈련비 지급 강행 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이의 제기로 보류되었으며 이후 훈련비 지급을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것이 부처 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강대식 위원과 부승찬 위원의 동의로 번안 요청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수정 내용은 훈련비 지급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사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하고자 하는 번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동의안 및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1번 하셔야지요.

○위원장 성일종 이거 끝내고 그거는 다음에 토론하시지요.

○박선원 위원 아니, 오늘 해야 돼요. 5분 30초 남았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성일종 김선호 국방장관직무대행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위원장님, 산회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산회만 안 하시면 돼요.

○위원장 성일종 좀 계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입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부승찬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정부에서 발의한 안 3건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군인의 처우 개선 및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발의해 주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본 법안들이 법사위 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좀……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황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지난번 질의 때문에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위원장 성일종 그리 하십시오.

○황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계엄 때 탄약 불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직무대행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당시 보면 부대가 출동하면서 탄약이 불출된 게 이게 민간인과…… 그것도 상대가 비무장이잖아요, 헌법기관에 들어간 거고. 제가 백번 양보해서 12·12 같은 경우, 상대가 무장됐을 때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탄약이 실탄이 불출된 거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민간인이고 헌법기관이고 사실 군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실탄까지 불출돼서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들어간 군인들이 이야기는, 계엄군 이야기는 훈련인 줄 알고 왔다, 도착해 보니까 국회다.

그러면 첫 번째 의문이 가는 거는 당시 정보사령부에 의하면 계엄 시에는 계엄사령관이 탄약 불출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법안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재판 중이라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 그러면 예하 부대의 훈련이라고 속이고 일반 탄약을 자동으로 불출돼서 갖고 나간 것처럼 한 것인지, 이거 부대원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아니면 두 번째, 간이탄약고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탄약고에서 불출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은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실제 500발, 어느 부대는 580발 정도 불출됐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는 몇만 발 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간이탄약고에서 가지고 나가서? 그러면 이건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경계태세 2급…… 여기 상황에 맞지도 않는 경계태세 2급을 발동하고 이거는 탄약 불출 준비 상태, 이것은 탄약을 무기고에서 꺼내서 부대에게 전달하지 않는 상태를 불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것은 지금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민간인 대상의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여기에 예하 부대원들을 훈련이라고 속여서 탄약을 가져가게 한 건지 아니면 탄약을 실탄을 가져가기 위해서 간이탄약고에서 기록도 없이 가져간 건지, 상황에 맞지도 않는 경계태세 2급을 발동했는데 경계태세 2급이면 탄약 불출 준비 상태여야 되는데 지금 준비 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난 5·18 때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방부가 좀 조사를 하고 개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개선이. 그래서 이 상황을 국방부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이거 무슨 죄를 털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5·18 이후에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시고 이 조사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관련된 사항을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요. 또 저희가 지금 수사하고 같이 영역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런……

○**황희 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침범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수사가 끝나더라도 이후에도 이건 개선돼야 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5분 더 쓰시겠다고요?

○**박선원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아니, 이 법안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박선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이 법안의 주요 내용 보면, 자료 7페이지 보면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매 권한이나 판매업자의 권리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현행 법안은 그것을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유지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게 법안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군용장구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현재 군인들한테 개인에 지급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그 부류에 포함이 됩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군화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헬멧부터 시작해서 장갑이나 기타 관련 개인이 쓸 수 있는 장구가 다 군용장구에 포함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군인공제회에서 지난 1년 시니어아미라고 하는 그 상품을 개발해서 15~23만 원에 판 것 기억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판매를 한다는 것이 제가……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다가 판매를 했는데 이게 1년만 하고 딱 판매가 중단됐어요, 시니어아미 장구가. 군인공제회에서 한꺼번에 사 줬습니다. 한꺼번에 사다가 시니어아미에서 사시겠다 하는 분들에게 이걸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니어아미의 회장이 윤 모 씨인데 이분이 우리가 존경하는 전 의원님, 성모 의원님의 최측근이에요. 이분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성모 의원님의 동생분이 위원장이시고, 그래서 이 법률이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동구매해서 한꺼번에 사 가지고 이미 한꺼번에 샀으니까 납품한 시니어아미의 윤 모 회장이 예를 들면 판매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중단했다가 또 판매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이거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고요.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발의했는데 위원장하고 상의 없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이 군용장구에 관련된 업체분들이 사실 다 중소기업이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정상 이것을 협상을 받고도 사업을 못 해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또 사업이 취소되는 이런 문제들이……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기가 돼서 정부 차원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연장해 주자는 차원에서의 접근이었는데……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이것이 그렇게 연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장관직무대행께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하고 이 군용장구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품목도 많지만 또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일시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판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든지 이미 납품해 놓고 물건이 다 소화가 안 되면. 이 법은 필요한데, 이 법은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의혹을 제기 드리니까 이용빈 기조실장께서는 확인하세요.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쪽에 확인을 해 가지고 시니어아미 장구 1년 동안 15~23만 원에 팔고 일시불로 한꺼번에 목돈으로 비싸게 사 가지고 이런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라 이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 관련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아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합시다.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규백 위원 장관대행님, 잘 하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가합니다.

지난 12월 9일 날 김현태 특임단장은 전쟁기념관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날 김 단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장관께서 지시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안규백 위원 또 지시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시한 적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 당시에 김현태 단장은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전 장관한테 이 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면서 울먹이는 상황을 보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TV에서 봤습니다.

○안규백 위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나와서 부대원들의 선처를 호소했던 김현태 단장의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악어의 눈물이었고 곧이어서 이 장소에서 이 말하고 저 장소에서 저 말하는 말의 번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07 단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보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어제 언론에서 나온 것을 좀 봤습니다.

○안규백 위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시 46분 경에 김현태 단장이 ‘본회의장 막는 것이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는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 지금 부대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적시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집회를 가로막고 계엄을…… 방해했던 명백한 물증적인 증거가 공개됐다고 봅니다. 김현태 단장은 지하 통로에서 본 위원을 마주치고도 그냥 통과시켰다는 것을 체포·구금 지시가 없었다는 근거로 지금 삼고 그것을 일관되게 현재에서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김현태 단장의 눈물을 믿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국회의 지하 통로에서 CCTV가 공개된 걸로 이것이 사그라졌습니다.

제가 그 인원을 본 것이 0시 59분 여간이었고요. 김현태가 단전을 시도했던 것이 1시 5분 경입니다. 제가 그 직전에 김현태 단장을 마주쳤는데 그때는 의원들이 정족수가 채워져서 이미 다 모여 있었고, 저에 대한 체포는 단순히 단전 우선 순위에 밀렸었던 것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판단이 쉽니다, 시간 여간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친구를 지하 통로에서 0시 58, 59분 경에 봤고 단전은 1시 5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행님께서, 단체 텔레 방이 이제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단장의 모습을 보고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명예를 목숨같이 여기는 707부대원들의 명예가 김 단장의 악어의 눈물과 거짓으로 인해서 실추됐다, 이 친구를 이런 자리에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참수부대 707부대원들의 사기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모든 국민 앞에서 또 국회에서, 현재에서 대국민 기만 행위를 한 이런 자를 아무런 문제 없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요망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령인 젊은 친구가 국회 앞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국방부 앞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현재 앞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황희 위원 여기서 눈물은 왜 흘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눈물을 왜 흘린 거야?

○안규백 위원 가만있어 봐,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한 다섯 번, 네 번 이렇게 번복이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저는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친구를 반드시 문책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이 계엄법은 제정법이 아닙니다마는 약 60여 건이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6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제정법이 아니지만 계엄법에 관련하여 공청회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60여 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성일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 수준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성일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안규백 위원 가만있어 봐. 장관대행의 말씀을 듣고, 제가 김현태도 관련해서 말씀드린 요청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하여튼 대화방 관련해서 언론에서 봤고 아마 수사에서 확인이 될 거고요. 사실 이번 관련된 사태에 있어서 제가 장관직무대행으로서 관련된 조치들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기소가 된 사람은 제가 인사적 조치를 다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김현태 단장은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원칙과 맞지 않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많이 쓰셨어요. 여기서 정리하시지요.

○안규백 위원 지금 우리 장관이 뜨뜻미지근하게 대답하셔 가지고.

○김병주 위원 1분 주시지요. 전임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니, 많이 드렸어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는데 강선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임종득 위원님 하시고 백선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난 2월 13일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경안을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내팽개치고 증액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현정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만으로 강행하고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추경이라는 방식으로 뒤늦게 예산을 처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안 내역을 국방 예산에 한정해서 보면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급식비, 기본급식비 증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지난해에 예결소위와 국방위 예산 심사를 다 통과하면서 여야가 합의돼서 증액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단기복무장려금은 162억 증액, 훈련간부급식비 695억 원 증액 그다음에 기본급식비는 2202억 원이 증액되도록 지난번에 다 회의에서 여야 간에 합의됐는데 이것들이 독단적으로 감액 예산만을 의결시키면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지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처리했어야 하는 예산들을 모으고 거기에 지역화폐 예산을 끼워 넣어서 결국 이번에 민생회복 추경안이라고 간판을 바꿔 단 것입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수결이 중요하지만 결국 다수결에 의한 표결은 합의와 협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되는 게 다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밝힌 야당의 예산 삭감의 문제점도 하나의 포함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법안소위를 한다 그래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여야가 합의돼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갖고 토의한다라고 하면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논쟁과 소리 지르지 않고.....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정말 원칙에 의거한 합의된, 하도록 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5분을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이건 바로.....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좀.....

○허영 위원 신상발언과 더불어 가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완전 편집·날조입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받았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발언권은 제가 먼저 다 말씀드렸잖아요.

○임종득 위원 발언 기회를 제가 미리 정해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합시다.

○위원장 성일종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장관직무대행님, 방금 안규백 위원님께서 707단 대화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내일 열리는 국조특위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또 김현태 단장이 나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국조특위에서 선정을 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지난주 제4차, 5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야 공히 추천했던 김현태 단장을 일방적으로 증인에서 제외를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때 있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같이 국조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여기에 항의해서 우리 여당 위원들이 퇴장을 하고 난 다음에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까지 다 또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이나 꽈종근 특전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회유가 있었네 없었네, 가스라이팅이 있었네 없었네 하는 부분들이 첨예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조특위에서 내일 반드시 저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인 채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께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좀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입니다.

일단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하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비상사태가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최초에 말씀드렸습니다.

○**백선희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래서 남용이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쑥 빼 버린 채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항만을 들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자의적 해석이나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통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60여 건의 계엄법 관련된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는 국회의 사전동의제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즉시 계엄 효력을 상실하는 내용 그리고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는 그런 내용들이 헌법하고 충돌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렸습니다.

○**백선희 위원** 바로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의결 요건을 신

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무회의 심의 과정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헌법 89조 3호에 보면 헌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 없이 심의만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마치 헌법 개정을 대통령께서 발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 화면에,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셨었는데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한 대통령 발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12조 4항의 위임에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무회의규정 제6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에 따라서 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셨고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토의를 거쳐서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유 중의 하나는 이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 결과가 다른 국법상 행위를 할 경우 자칫 위헌·위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 헌법 개정이 국가의 법적 기틀을 바꾸는 중대한 절차이기에 국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결 절차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헌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헌법의 위헌 사항이어서 개정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무회의록에서 했던 한 사안이 아니라 지금 헌법에 명확하게 그 사안들은 국무회의 심의로 규정이 돼 있는 이 상태에서 그것을 하위법이 심의 의결이라는 것을 같이 가는 것에 대한 것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백선희 위원** 물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규정에 따라서 이런 의결의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우 긴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헌법이 개정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그대로 둔다라고 하면 우리가 끔찍이 생각하는 제2의 불법 계엄과 내란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1만 분의 일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방치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 법체계와 대통령의 계엄 선포 변경에 대한 사전적 통제의 절차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소위가 다시 개최되게 되면 이 계엄법 관련해서 더욱더 숙고해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만약 이러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을 때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하

면 당연한 국민적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소위 논의할 때 여야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방금 강선영 위원께서 국회의 국방 관련된 장병들 및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 비용에 대한 예산을 민주당이 증액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삭감했고 이런 정말 허위·날조를 넘어서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아니면서 그동안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심의 과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계신 김선호 권한대행께서 예결위 간사인 저한테 찾아와서 5000억 규모에 있어서 장병들과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 기본급식비 인상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누누이 지적하고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저는 예결위 과정 속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대정부질문을 했었고 예결소위 과정에서도 이 증액 요구를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막판에 기재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복원 그다음에 특활비 복원 이외에 증액에 대한 아무런 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는 예결위 과정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증액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치 민주당이 처우 개선과 기본급식비에 대해서 증액 무산을 시킨 것처럼 허위로 편집해 가지고 이런 날조·선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억지로 편집적으로 날조해서 하는 망상에 기반한 민주당의 예산 삭감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지요.

○**허영 위원** 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과 장병, 군인들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위원장 성일종**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시간드렸습니다.

○**허영 위원**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충분히 드렸어요. 그만하시지요. 이것은 한두 번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고 또 계속 치고받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치고받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만 좀 하시지요. 왜냐하면……

○**김병주 위원** 3분만 딱……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회의 이제 그만 저한테……

○**김병주 위원** 3분만 좀 주세요.

○**추미애 위원** (손을 훑)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도…… 법안과 관련돼서는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김병주 위원님, 충분히 제가 다 기회 많이 드렸고.

○**김병주 위원** 3분만 딱 주세요. 그냥 몇 가지 확인만……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한테 좀 따라 주세요. 제가 충분히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3분만 좀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3분만 주세요.

○**추미애 위원** 3분만 주세요.

○**허영 위원** 아니, 본인이 저렇게 허위·날조 주장을 해 놓고 그냥 자리를 뜨고 일어나고 말이야……

○**위원장 성일종**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3분만 주세요.

○**김병주 위원** 3분만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다음에 하시지요.

○**김병주 위원** 다음에 언제 열지 모르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장대식 강선영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박찬대 백선희 부승찬 성일종 안규백
윤상현 임종득 조승래 추미애 한기호 허영 황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희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인사복지실장 김수삼

자원관리실장직무대리 이갑수

기획관리관 김경옥

계획예산관 신태복

법무관리관 홍창식

인사기획관 오영대

동원기획관 김신숙

보건복지관 김은성

군사시설기획관 이인구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이성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안찬명

병무청

청장 김종철

기획조정관 문경식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입영동원국장직무대리 배철훈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방위사업청

청장직무대리 강환석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조현기

미래전력사업본부장 한경호

기획조정관 홍미루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정책조정담당관 김경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직무대리 이정석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직무대리 장봉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직무대리 이용진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2월 11일 회부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9)

이상 6건 2월 13일 회부됨

○의안 심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14)

(분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서면동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

(2025. 2. 6. 강대식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의안 반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월 17일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반려됨

○보고서 제출

2025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 제출

(2025. 2. 13. 국방부장관 제출)